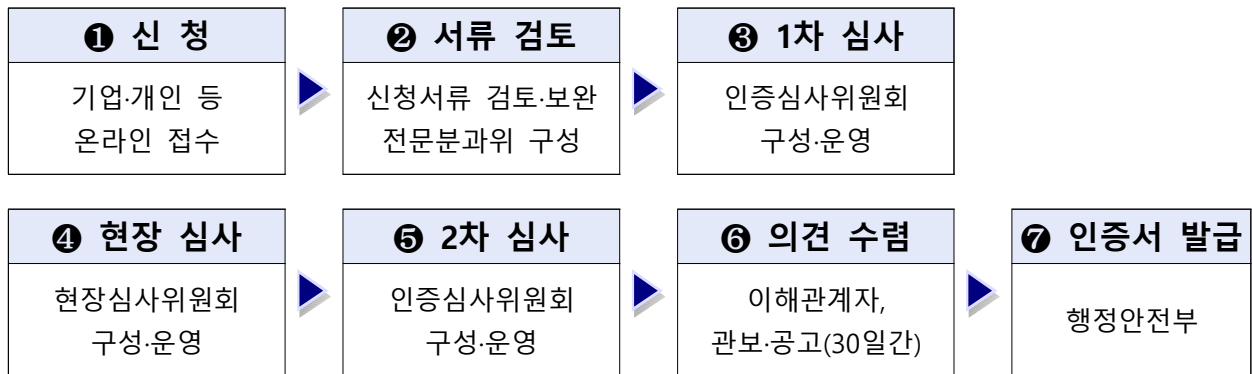


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개요

- (목적) 우수 재난안전제품 개발·보급 촉진과 재난안전산업 진흥 및 국민 안전 증진을 위하여 재난안전제품 인증
- (근거) 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 제16조(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)
- (인증형식) 법적근거가 있는 **법정인증**, 법정의무가 아닌 **임의인증**
- (인증대상)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**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***
 - * ①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
 - ②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
 - ③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
- (인증절차) 연 2회(상·하반기) 기업의 신청 받아, 인증심사위원회에서 3차에 걸친 심사(1차, 현장, 2차심사)를 통해, 재난안전제품 인증



- (인증표시) 인증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에 **인증마크** 등 표시
- (사후관리) 인증 유효기간(3년) 내 1회 이상 정기 품질검사, 필요시 수시 품질검사 실시, 인증된 제품의 품질유지 여부 지속적 관리
- (인센티브) 국가·지방 수의계약, 기재부 혁신제품 지정,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가점(1점), 중기부 우선구매대상 제품 지정 등